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3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종교단체 B교회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최고은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D) E회 소속 지교회이고, 피고는 2009. 3.경 원고의 담임목사 후임자로 부임하여 2011. 1. 16.경부터 2013. 9.경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2. 15. 당회(당회장 피고)의 결의를 거쳐 피고에게 사택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1. 16. 당회에서 ‘피고가 사택에서 무상거주 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한 후 피고에게 사택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추가로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경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70,000,000원 중 나머지 19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경 피고의 담임목사에서 사임하면서 원고로부터 분리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3. 10. 6. 당회(당회장 F)에서 이와 관련하여 ‘분립자금은 전세보증금(270,000,000원)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31.경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전의 모든 일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부제소합의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합의서의 작성 당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당회의 결의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70,000,000원을 피고의 분립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0,000,000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195,000,000원을 제외한 7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의 2013. 10. 6.자 당회결의에 의한 분립자금지원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고, ② 원고의 정관(을 제3호증) 제5, 6조에 의하면, 위 분립자금지원은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피고에 대한 분립자금 지급은 유효하며, ③ 설령 위 정관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단헌법 제9장 제4, 6조,

제21조에 의할 때 원고의 분립자금 지급은 당회의 사무처리 범위에 포함되어 당회의 결의에 의한 분립자금 지급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참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참조).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당회는 피고에게 2009. 2. 15. 120,000,000원, 2011. 1. 16. 15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0. 6. 위 270,000,000원을 피고의 분립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금전대여행위 및 대여금채권의 처분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피고 교회 소속 교인들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정관(을 제3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등 참조),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작성일의 기재도 없는 점, ② 원고의 교인들 사이의 교회출입

및 예비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19. 6. 11.자 결정에서 원고 교인들이 피고에 대한 분립자금지원결정 이후인 2015. 12. 20.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관을 실질적으로 제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인정을 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11호, 항고 및 재항고 기각), ③ A종교단체 교단헌법 제9장 제4조는 ‘G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장 제6조는 당회의 권한에 관하여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9장 제4조는 교회에 당회장이나 임시 당회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제9장 제6조도 당회가 교회 기본재산의 토지, 가옥에 관한 교회업무를 처리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임무의 범위를 넘어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을 당회결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당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위 교단헌법 제21장 제1조 제2항은 공동의회의 소집에 관하여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립자금지원결정 당시 원고 당회가 공동의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경우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동의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의회나 당회의 권한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행위 및 대여금채권의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11호 결정에서와 같이 피고에 대한 분립자금지원결정 당시 원고의 정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없어 총유물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2년경 H 목사에게 의하여 설립되었고 2011. 1. 16.경 H에서 피고로 교회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2013. 9.경 피고가 담임목사에서 사임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립자금지원결정 당시 E회의 F가 임시당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A종교단체총회(D) E회 소속 지교회로서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한 분립자금지원결정 당시 원고의 정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종교단체의 교단헌법이 피고 교회의 규약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를 두고 있어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점, ④ 원고는 구성원들의 증감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교단체로서의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분립자금지원결정의 당시 원고의 정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및 그 대여금채권의 처분에 해당하는 분립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원고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7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195,000,000원을 제외한 7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임효빈, 판사 방민우